

CMS 이용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(목적) ~ 제27조(부도자금 반환절차) (생략)	제1조(목적) ~ 제27조(부도자금 반환절차) (좌동)	
제28조(입·출금착오 자금의 반환) ① 이용기관의 수납·지급모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, 이용기관은 이를 <u>즉시</u> 반환하여야 한다.	제28조(입·출금착오 자금의 반환) ① 이용기관의 수납·지급모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, 이용기관은 <u>반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(단, 공휴일이면 익영업일)</u>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	- 문구 수정(착오자금에 대한 이용기관의 반환처리 기한 변경)
1. ~2. (생략)	1. ~ 2. (좌동)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반환요청을 받은 <u>날의 다음 영업일까지</u> 착오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<u>결제원</u> 은 동 자금을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이용기관의 CMS 수납모계좌에서 <u>입의</u> 출금할 수 있고, 이 때 해당 이용기관의 출금동의는 본 약관 조항으로 갈음하기로 한다.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반환요청을 받은 <u>날로부터 30일 이내에(단, 공휴일이면 익영업일)</u> 착오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<u>착오 자금의 반환을</u> 청구한 기관은 동 자금을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이용기관의 CMS 수납모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고, 이 때 해당 이용기관의 출금동의는 본 약관 조항으로 갈음하기로 한다.	- 문구 수정(미반환액 출금 관련 주체 변경)
제29조(납부자의 보호) ~ 제39조(관할 법원) (생략)	제29조(납부자의 보호) ~ 제39조(관할 법원) (좌동)	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(신 설) (별표) (생 략)	<u>부 칙(2024. 3. 27.)</u> <u>본 약관은 2024. 4. 27.부터 시행한다.</u> (별표) (좌 동)	- 부칙 신설